



작업장 비상구 설치 등

제1편 총칙

제2장 작업장 제16조 ~ 제19조

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위험물질의 적정한 보관, 비상구 및 경보설비 설치를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한다.

1 위험물 등의 보관

<제16조>

폭발성물질,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*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해당 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.

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

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,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,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, 인화성 액체, 인화성 가스, 부식성 물질, 급성 독성 물질 등 7가지 종류의 물질

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위험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격리하여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유해물질의 증기나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.

2 비상구의 설치 및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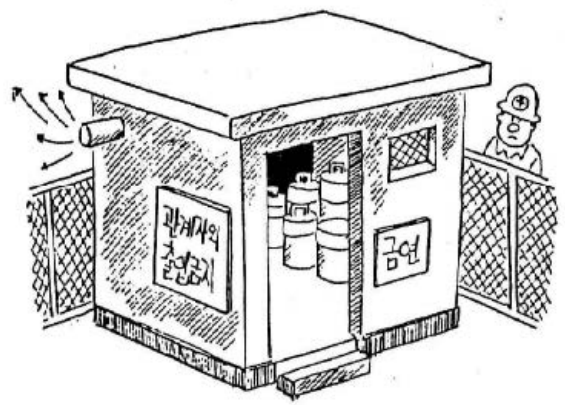
<제17조>

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,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- 1 |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,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
- 2 |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
- 3 | 비상구의 너비는 0.75m 이상으로 하고, 높이는 1.5m 이상으로 할 것
- 4 |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,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
☑ 비상구·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

구분	기준규칙	건축법	다중이용업소법
비상구 개수	비상구 1개 이상	2개 이상	2개 이상
출입구 방향	출입구와 다른방향	별도 규정 없음	출입구와 반대 방향
출입구 간 거리	출입구로부터 3m이상	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/2 이상,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/3이상	주된 출입구로부터 가장 긴 대각선 또는 최대 길이 값의 1/2이상 떨어진 위치
수평거리	50m이하	- 30~50m 이하 : 주요구조부의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에 따라 정함 - 75~100m 이하 :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여부 및 무인화 공장 여부에 따라 정함	별도규정 없음
비상구의 크기	너비0.75m 이상, 높이 1.5m 이상		
비상구 설치 면제	바닥면 가로,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	1개의 피난시설만 설치해도 되는 기준 직통계단 200m ² 건축물의 내부 출구 300m ² 지하 비상탈출구 50m ²	바닥면적 33m ²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



3 경보용 설비

<제17조>

연면적이 400m² 이상 또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가. 경보용 설비 설치 기준

- 1 | 설비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경보설비를 확보한다.
- 2 | 소음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시각적 경보설비를 설치한다.
- 3 | 각종 비상경보설비는 주 1회 작동시험을 한다.

나. 비상경보의 종류

- 1** **경계경보**
 -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한다.
 - 필요시 공정상의 이상 또는 독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없을 때까지 취명한다.
- 2** **가스누출경보**
 - 고·저음의 파상음이 연속적으로 취명한다.
 -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가 계속 누출되는 것을 말한다.
- 3** **대피경보**
 -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단음으로 계속 취명한다.
 - 폭발 또는 독성물질의 다량 누출 등 급박한 위험상황 일 때에 취명하며 대피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를 반복하여 안내한다.
- 4** **화재경보**
 - 5초 간격으로 중단음을 계속 취명한다.
- 5** **해제경보**
 - 1분간 장음으로 취명, 비상방송을 통해 상황 종료를 안내